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08

발의연월일: 2025. 1. 9.

발 의 자: 차지호·정준호·신정훈

박희승 · 서영교 · 위성락

황 희·정동영·임호선

박수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하도록하고 있으며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는 납세번호 부여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 및 납세번호로 금융거래를 할수 있음.

그러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사용하는 명칭에 제한이 없어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연인인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자연인의성명과 동일한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전세사기통장으로 사용한사례 또한 발생하였음.

이에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 명의인이 자연인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실지명의와 함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조제1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인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하 이 항에서 "법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거래자에 대하여는 실명에 법인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u>이 경우 법인</u>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
	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이하 이 항에서 "법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거래자에 대
	하여는 실명에 법인등임을 표
	<u>시하여야 한다.</u>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